

COVID-19 대응 관련 국제기구 및 스킴오너 지침 요약

<참고자료>

- ◆ [공문]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(COVID-19) 확산에 따른 인증기관의 사후/갱신심사 대응방안 안내(인정심사-2020-169, '20.2.26)
- ◆ [공문]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(COVID-19) 확산에 따른 IAF MD 4 적용 안내(인정보부-13, '20.3.11)
- ◆ IAF FAQ (<https://iaffa.com/>, 이하 FAQ)

1. 특정 인증스킴별 지침

□ 산립인증(PEFC)

- COVID-19 대응을 위한 심사계획 수립 및 심사 시 예상되는 리스크 평가 등을 포함한 문서화된 방침 및 프로세스 수립 필요. 자세한 사항은 링크 참조

<https://ch.pefc.org/media/2020-03/773630e-e26c-4aae-9756-a6c520a86439/c180fb27-b3fc-5a04-9f85-8414699fa5e2.pdf>

□ FSSC 22000

- IAF ID 3 적용 시, 인증 연장 외 다른 방법이 없음이 실증되어야 함. 자세한 사항은 링크 참조

https://musercontent.com/b51fe04f463a46a725f8bc96a/files/18fe2755-498b-430c-82e4-9848de6735bc/Coronavirus_position_paper_for_CBs_March_2020_final.pdf

2. IAF 지침

□ IAF MD 4에 따른 원격심사 지침

- 이론적으로는 MD 4에 따라 인증심사 과정 전체에 원격심사가 수행될 수 있음(FAQ 5)
- (ISO 45001) IAF MD5에 따라 문서/기록검토 및 직원 인터뷰만 원격심사 대상이나, COVID-19 비상사태 종료까지 제한 없이 프로세스 및 리스크 관리에 대한 원격심사 가능(FAQ 14)
- (ISO/IEC 27006) off-site 원격심사 비율은 30%이나 예외적 상황에 따라 IAF MD 4 적용 가능. 따라서 COVID-19 기간 동안 100%로 확대, 적용할 수 있음(FAQ 6)
- (인증기관 전환) IAF MD 2의 2.2.4항 목록 및 문서검토 시 추가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원격으로 평가 가능한 경우 사전 전환방문을 원격으로 실시할 수 있음(FAQ 16)

□ IAF ID 3에 따른 심사연기를 위한 지침

- IAF MD 4에 따른 원격심사가 불가능한 경우, ID 3 조건 충족 시 적용될 수 있음(FAQ 10)
- 예외적 상황에서 평가활동을 최대 6개월 연장하더라도 인증주기는 원래의 주기를 따름 (FAQ 8)(FAQ 10)
 - 적합성평가활동 연장 시 인증서/보고서 유효기간 또한 그에 상응하여 연장 가능(FAQ 13)
 - 유효기간 연장이 명시된 레터를 첨부하여 문서화 할 것을 강력 권고(FAQ 10)
- (ISO 45001) OHSAS 18001의 ISO 45001 전환은 2021년 9월 30일까지 연장 가능(FAQ 15)

※ KAB는 지속적으로 각 국제기구의 지침을 파악하여 주요 업데이트 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.